



교직원 복지규칙

규정번호	3-1-32
제정일자	2013.07.01
개정일자	2019.05.01
개정번호	Ver.2 총페이지 2

제정 2013년 7월 1일
 개정 2017년 6월 1일
 개정 2019년 5월 1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교직원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06.01.>

1. 전임교원임용규칙 제4조의 일반교원 및 실습교원
2. 일반직원
3. 조교
4. 전임교원임용규칙 제4조의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강의교원, 실습전담교원 및 계약직 직원은 제3조의 제3호, 제6호 및 제9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5.01.>

제3조(복지지원의 내용) 복지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1.>

1. 본 대학에 입학하는 교직원 본인 및 자녀의 등록금 지원
2. 교직원 자녀의 중·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3. 교직원 보건상담 서비스 지원
4. 삭제
5. 교직원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6. 교직원 체력단련실 이용 지원
7.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8. 정년퇴직 기념품 지원 <신설 2019.05.01.>
9.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복지지원 <개정 2019.05.01.>

제4조(예산) 모든 복지 지원은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교직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 학년 초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6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